

학생의 권리

차별성 부당 행위

시민권법은 K-12 공립 학교 내 차별 및 차별적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한 개인이 법에서 **보호대상(protected class)**으로 규정한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불공평 또는 불평등 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호대상이란 공통 특성을 공유하며 연방 및 주정부 법에 따라 차별 및 부당행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집단에 워싱턴 주 법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간주됩니다.¹

인종 및 피부색	성적 취향
출신국	성별 표현
종교 및 신념	성 정체성
성	재향군인 또는 군인 신분
장애	훈련견 또는 도우미 동물 사용

차별적 부당행위 및 적대적 환경

차별성 부당 행위

학교측은 학생들이 차별성 부당행위를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별적 부당행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학생의 보호대상 특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또한**
2. 적대적 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심각한 행위

차별적 부당행위는 학생간, 직원 대 학생간 행위 및 학교 방문자와 관련된 행위를 포함합니다.

적대적 환경

부당행위는 해당 행위가 너무나 심각하거나 만연해있으며 또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해당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기회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적대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질병, 학교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성적 또는 출석률 하락 등을 적대적 환경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는 협박, 소문을 퍼뜨리거나 욕을 하는 행위, 경멸성 농담, 신체적 폭력, 신체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위협하거나 치욕스러운 기타 행위 등 다양한 형식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는 해를 입힐 의도가 없거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 특성을 겨냥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일회성 행위라도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적 부당행위(Sexual Harassment)는 차별적 부당행위에 속합니다.

성적 부당행위는 본질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원치않는 행위 또는 의사소통으로 (1) 해당 학생이 예를 들면 성적 또는 스포츠 팀 배치와 같은 대가를 얻기 위해 이러한 원치않는 성적 행위 또는 의사소통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거나 (2) 해당 행위가 학생의 학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¹ 웹터 28A.642 RCW,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2>. 웹터 28A.640 RCW,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0>. 웹터 49.60 RCW,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9.60>.



학생의 권리

차별성 부당 행위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과 관계없이 어떠한 학생 또는 교직원이라도 성적 부당행위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부당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인 부탁을 들어주도록 압력을 행사
- 원치않는 성적인 접촉
- 노골적인 성적 내용을 담은 문자, 이메일 또는 사진을 배포
- 성적인 농담, 소문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언급
- 강간 및 성폭행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성적 부당행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담당 교육구의 방침 및 지침 및 관련 정보는 www.k12.wa.us/Equity/Districts/SexualHarassment.asp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Bullying) 또한 차별적 부당행위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신고할 경우 학교측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권법에 따라 차별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부정행위가 학교의 부당행위, 위협 및 괴롭힘 (HIB) 방침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학생의 보호대상 특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 역시 차별적 부당행위로 간주됩니다.

학교의 괴롭힘 방지 또는 HIB 방침에 해당 행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당행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측은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교직원은 학부모 또는 학생의 공식적인 항의가 없었더라도 차별성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았거나 해당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지한 즉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학생의 보호대상 특성에 근거한 괴롭힘을 통해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이 밝혀질 경우, 교직원은 해당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을 즉시 없애야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해당 부당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부모 또는 학생의 공식적인 항의가 없었더라도 차별성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았거나 해당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지한 즉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직원은 또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부당 행위를 통해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이 밝혀질 경우, 교직원은 해당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을 즉시 없애야 합니다.

학교측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1. 학교에서 차별적 부당행위가 해당 학생에게 미친 모든 영향을 처리하고 또한
2.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측은 학생 및 학부모가 차별적 부당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